

h·well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요양급여실				
부장	신건홍	033)736-3802	배 포 일	2021. 3. 17.[수] (총 5매)	
팀장	박은숙	033)736-3820	배포부서	국민 소통실	부장 박지선 팀장 최재우 033)736-1405, 1430

건보공단, '통합재가 서비스' 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돕는다.

- 미래형 재가 서비스로 고령화 사회 대비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은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간호+방문요양(목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 2021년에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하여,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하여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

- 장기요양기관센터장의 권유로 처음 통합재가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다는 한 수급자는
 - “위급 상황 시 간호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바로 인지하고 전문 의료 처치를 수행한다는 점에 신뢰를 느낀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혔다.
-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창원 마산의 한 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 “매 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와 전문 회의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종합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 “이용자들 역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느껴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을 반영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Aging In Place)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붙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 끝.

붙임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참고 자료

1. 사업 개요

- (기간) '19.8월 ~ 본 사업 시행 전
- (대상) 1~5등급 수급자 ... 의료급여, 국민기초, 타 법령 간병급여 수급자 제외
- (기준)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지침
- (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활용
- (기관선정) 동일 기관기호로 유형별 재가급여를 운영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참여 가능, 단 최근 행정처분 받은 기관 등 최소한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매월 15일까지 본부로 수시 접수 후 20일까지 선정 통보
- (급여모형)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시 월정액 지급
- (건강관리 강화) 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
- (질 높은 서비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수행하며 수급자 상태 종합점검

2. 세부 모형

주야간보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주야간보호 정(현)원 10명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 주야간보호 간호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주야간보호 30:1 추가 인력* 배치 (1/2 이상은 반드시 간호사 배치)
 - * 추가 인력 : 간호(조무)사, 작업(물리)치료사

○ 급여제공기준

- 주야간보호 월 8회 및 방문요양 월 1회 이상 필수 제공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가정방문통합형

○ 인력배치기준

-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월 4회 및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제공
- * 5등급 수급자는 월 2회 이상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이상 제공

<급여제공 기준 일수 및 평균 방문요양 시간>

구분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정방문통합형	
등급	급여제공기준일수(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급여제공기준일수(일)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분)
1	23	200	26	200
2	21	190	24	180
3	21	150	24	160
4	19	150	23	150
5	18	140	21	150

* 해당 월 제공된 방문요양 제공시간의 합 ÷ 해당 월 방문요양 총 제공일수

3. 주요 개선사항 ... '21.1.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 방문간호 시설장 직접 서비스 제공 가능
- 급여제공 기준일수 및 1일 평균 방문요양 시간 조정
- 중복급여(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요양 또는 차량이용 방문목욕+방문간호)
예외 기준 추가
-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시 가산금 지급(최대 8일까지 인정)
 - 대상 : 1~4등급 수급자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으로 제외
 - 기준 : 등급별 월 8일 이상 또는 주 2일 이상 다횟수 방문요양 제공
 - 필요대상 : 독거, 치매, 열악한 환경, 방임, 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자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다횟수 1일	9,380	8,750	8,130	7,500
다횟수 8일(최대)	75,040	70,000	65,040	60,000